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(안)

2017. 12.

보건복지부

- ◇ 본 문서는 자유롭게 전달, 게시할 수 있는 공개용입니다.
- ◇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작성된 추진계획 초안이며, 의견 반영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.
- ◇ 본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세 가지 방법중 한 가지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국민신문고 웹사이트(epeople.go.kr) > 민원·제안·참여 > 정책토론 > "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계획(안)" 검색 > 댓글달기
 - *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로그인이 필요함
 - 의견 제출 웹사이트 (http://bit.ly/2BUY6ZH)
 - 이메일 (bigdatavoice2018@gmail.com)

목 차

1. 배 경	1
2. 기본 방향	2
3. 사업 내용	3
4. (가칭)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추진 …	7
5. 세부 추진 일정	8
5. 세부 추진 일정 붙임 1.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보호 체계 개요	
	9
붙임 1.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보호 체계 개요	9
붙임 1.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보호 체계 개요분임 2. 주민등록번호 일방 암호화 개념	9 12 13
붙임 1.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보호 체계 개요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9 12 13 16
붙임 1.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보호 체계 개요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9 12 13 16
붙임 1.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보호 체계 개요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9 12 13 16 17

【 2018년 사업예산 개요 】

- ◇ (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, 46억)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정보를 연계하여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
 - ⇒ 국회 예산심의 결과 77억→46억으로 감액(△31억)
- ◇ (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·활용 네트워크, 24억) 의료기관·공공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취합*할 수 있는 기반 구축 * 개인정보 제공 없이 분석결과만을 취합, 연구에 활용
- ◇ (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·활용 강화 연구, 19억) 실제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셋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R&D 지원

□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중요성

- 공공기관 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, 건강상태 및 의료 이용 흐름을 파악하여 정책개선, 의학연구의 재료로 활용
- 각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종류의 **데이터 간 연계**를 통해 기관별 데이터로는 할 수 없었던 **다양한 종류의 연구가 가능**해짐
 - * 예1) 건강검진(건강보험공단) ↔ 진료내역(심평원) ↔ 암등록(암센터) ⇒ 건강검진 시 발생된 의심증세와 진료내역 간 상관관계, 암종류 및 예후까지 연관분석
 - * 예2) 약 처방내역(심평원) ↔ 진료내역(심평원) ↔ 건강검진(건강보험공단) ⇒ 처방약별로 이상 진료패턴 및 건강검진 상 이상패턴 자동발견 → 부작용 조기감지
- 보건의료 전 분야에서의 근거기반 정책개선 및 의학연구 가능
 - 치료법·약제·의료기기 간 효과 비교, 제네릭 약제의 동등성 분석, 감염병 유행 조기탐지, 의료기관 종별 진료양상 분석 및 정책개선 등
 - 국민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효율적·효과적 의료체계 구축에 기여

2 기본 방향

□ 보건의료 빅데이터 3대 추진원칙

- ①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
- ② 시민참여ㆍ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구조 구축
- ③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

□ 시범사업 운영 우선 추진

-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안전성, 효용, 추진방향·내용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만큼, '18년에는 "시범사업"으로 추진
 -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사용 목적·대상 데이터·이용자 등을 제한
 - 시범적 R&D 연구 지원을 통해 플랫폼의 활용방안 검토 및 성과 평가

【 빅데이터 이용목적 및 이용자 등 】 ——

- ◇ (목적) ① 보건의료 분야 정책연구 ② 의료정보보호 기술 연구③ 보건의료기술 연구 ④ 건강 관련 학술연구 등 4개 분야
- ◇ (이용자)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·지방공공기관, 국내 의료기관·학계·연구기관(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필)
- ◇ (절차) 자료이용 신청 접수 → 이용목적 등을 살펴 자료 제공여부 건별 심의
- 시설투자는 우선 필요 최소한도로 구축하고, 향후 빅데이터 활용 방안·목적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단계적으로 필요 장비 등 구축 확대
 - 현재 시급하지 않은 **시스템 과부하 예방 장비** 등은 **제외**(이중화 구조, 백업장비, 사용량통제 S/W 등)

3 사업 내용

□ 사업 개요

- **(사업 단계) 준비단계**('17) 시범사업('18~'20) 본사업('20~)으로 추진
 - 시범사업 종료 전 평가 및 본사업 여부를 결정하되, 위원회를 통해서 **의견수렴 및 평가결과를 공개**
- (추진전략) 향후 5개년에 걸친 보건의료 빅데이터 청사진 수립
- (거버넌스) 정책 전반에 걸쳐 토론, 심의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협의체(위원회) 구성·운영
- (플랫폼)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확충
- (입법 추진)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 (특별법 제정 등 추진 검토)
- (R&D) 공공적 목적의 의료기술·정책·정보보호 기술 등 연구를 위한 R&D 지원 병행

< 단계별 사업 추진(안) 개요 >

연도	2017년	2018년 20		19년	2020)년	2021년	2022년
단계	준비단계	시범사업단계 본사업단계						
전략	전략 수립	전략 추진						
거버넌스	위원회 준비	·	위원회 운영					
플랫폼	구축준비	정보화 계획	11:		폼 구축 _{2년}	축 본사업 전환, 이용자 집중 2년차 필요 시 시스템 확충		
	기H 기어	<u> </u>	시범사업					
사업	시범사업 기획	본사업 착수, 체계수립 평가 (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 ²			거쳐 추진)			
법	특별법안 ㅁ	⊦련 특별법 제정 추진						
R&D		보건의료 빅데이터 R&D 지원						

□ 활용 방안

- 공공적 활용 원칙 아래, 4개 분야 연구로 한정
 - * 구체적 범주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
 - ① 보건의료 분야 정책연구
 - 보건의료 분야 정책 기획, 평가, 개선 등을 위한 연구
 - 보건의료 전달체계 이용현황, 지역별 건강현황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환경을 살피기 위한 연구
 - ② 의료정보보호 기술 연구
 -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보호 처리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
 - ③ 보건의료기술* 연구
 - *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하여 연구범위 검토
 - 법령상 정의와 같이 의과학, 치의학, 한의학, 의료공학·의료기기, 의료정보학, 의약품 분야 연구 중 **영리적^{*} 연구 제외**
 - * 시장분석, 개발된 제품의 마케팅 등 의학적 진보와 무관한 연구
 - ④ 건강 관련 학술연구
 -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연구 중 건강과의 관계가 명확한 학술연구
- 분야별 구체적 연구의 유형, 활용 가능한 데이터 등은 **위원회** 심의를 통해 결정,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규범화
 - * 연구 유형 및 활용가능 데이터 예시 붙임 3, 4 참고
- 보건복지부 R&D 사업('18년 19억)으로 **공공적 목적의 의료기술** 연구 및 정책연구 지원, 향후 사업 안정화에 따라 R&D 확대 추진

□ 연계 데이터

- **4개 공공기관**(건보, 심평원, 질본, 국립암센터) 보유 데이터를 연계·활용
 - 건강과 연관된 전체 데이터 중에서, 활용·분석의 안전성이 검토된 데이터에 한해서 연계·개방을 허용
 -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 가능 데이터를 선정, 고시를 통해 규범화 < 각 공공기관 별 개방가능한 데이터 예시 - 붙임 4 참고 >
 - ◇ (건강보험공단) 가입정보, 건강검진정보, 영유아·암검진, 요양기관, 장기요양 판정, 장기요양기관 등
 - ◇ (건강보험심사평가원) 병의원정보, 청구내역, 수가DB, 의약품 처방정보 등
 - ◇ (국립암센터) 암등록정보, 암검진 코호트,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
 - ◇ (질병관리본부) 유전체 정보, 각종 건강조사 정보

□ 개인정보 보호 조치

- ① 비식별화 조치
 -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, 주민번호·생년월일 등은 모두 삭제
 - 특이한 병명이나 희귀한 질환 기록 등은 삭제하거나, 대분류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
 - 연구자에게 제공될 데이터를 사전에 분석, 어떤 사람의 데이터인지 알아낼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, 위험이 클 경우 제공 거부
 - * 위험평가, 제공여부 결정 등은 자문위 산하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에서 수행
- ② 정보보안 기술 적용
 - 인터넷에서 분리된 별도의 망(행정망)을 활용함으로써, 악의적 외부 해커로부터의 공격 등에서 원천적으로 방어 및 보호
 -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서버를 위치함으로써 국가 중요 기간전산 시스템과 함께 방화벽 등 대규모 보안장비를 공유, 안전성 담보 가능
 - 서버 간 통신, 자료제공 시 등 전송구간은 모두 암호화함으로써, 데이터 가로채기 공격을 예방하고, 위변조 공격 등에 대응
 - * 행정안전부 정보화 검토, 국정원 보안검증, 개인정보영향평가 추진 예정

□ 거버년스

-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 및 정책방향 전반에 관해 "참여"와 "투명성"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·유영
 - (참여) 학계·의료계·전문가·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, 일반 국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 마련
 - (투명성) 빅데이터 정책 추진, 플랫폼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버넌스를 통한 모니터링체계 확립
- 거버넌스 구축방안 (안)
 - (자문위원회)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최상위 논의기구로서 각계 대표로 구성*, 플랫폼 구축·빅데이터 활용 등 주요사항 심의
 - * 복지부 차관(위원장), 학계·의료계·전문가·시민사회·관계부처 등 20인 내외
 - (공론화위원회)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의견들을 수집·토의·정제하여, 자문위 심의활동 지원 및 대국민 소통을 담당
 - * 민간위원장 선임, 보건산업정책국장(부위원장) 및 각 분야 대표 30인 내외로 구성
 - (분과위원회) 데이터연계(연계기관간 협의), 데이터제공(제공 목적·내용 등 심의), 개인정보보호 3개 분야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구성

< 보건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(안) >



4

[가칭]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추진

□ (가칭)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(안) 추진 검토

- 보건의료 속성, 데이터 활용 의학연구의 중요성 등 고려한 보건 의료 분야 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
 -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"건강정보"를 하나의 분류로 규정, 종류별 처리 방법 및 안전수칙, 허용범위 등 세분화가 어려운 점 존재
 - * 예 : 키·몸무게 / 진료기록 / 유전자 등이 구별되지 않고 "건강정보"로 통칭
- 향후 법안 마련 시 **중요 내용 및 방향성** 등에 대해서는 **위원회** 논의를 반드시 거쳐 추진
 - * 법(안) 논의·검토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과제인 점을 고려. 공론화위원회를 적극 활용
 - 안전한 개인정보 연계·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오남용에 대한 제재조치도 보다 강화할 필요

□ 특별법(안) 검토 필요사항

- 정보소유자(본인)의 권리 보호
 - 보건의료 정보의 원천적 권리 소유자인 개인을 보호하고, 오용· 악용에 대비하여 **사전적·사후적 조치**를 할 수 있는 방안
- 적절한 보안조치, 악의적 이용에 대한 대책
 -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연계를 위한 방법, 활용 단계의 비식별조치 등
 -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해 재식별화 시도, 성공, 자료유출 등 잘못된 이용에 대한 처벌조항 등 법적 안전장치 마련
- 활발한 정보연계 및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방안
 -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위원회*, 기본계획 수립, 국가투자·지원 등 규정 * '17년 말~'18년 초 설치될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문위원회를 승계
 -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,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 제공 심의 분과위원회 구성
-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유 기관 간 연계 시 정보보호의무 등

5 세부 추진 일정

○ 2017년 4분기

-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
-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(안) 기획
- 자문위원회, 공론화 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성계획(안) 마련
-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안 마련 착수

○ 2018년 1분기

-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문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성
 - * 자문위원회에서 추진전략(안), 플랫폼 활용방향, 데이터·이용자 범주 등 논의
-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발표
-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협의 (조달청, 행안부, 국정원 등)

○ 2018년 2분기

- 보건의료 빅데이터 R&D 과제 착수
- 플랫폼 운영지침, 데이터제공계약서, 약관 등 개발 착수
-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법안 논의

○ 2018년 3, 4분기

-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, 수행

○ 2019년 상반기

- 플랫폼 운영지침, 데이터제공계약서, 약관 등 최종확정
- 플랫폼 1차 오픈 (비식별화, 기관 간 정보연계 기능 위주)

○ 2019년 하반기~2020년

- 플랫폼 2차 사업 추진, 2차 오픈 ('20)

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보호 체계 개요

< 정보보호 대책 수립 경과 >

- □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 구성('17.3) 시 정보보호 분야 중요성을 인식, 정보보호·기술 분과를 별도 설치하고 **정보보호·암호화 분야 전문가로 구성**
 - (위원장)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한근희 교수
 - (위원) 서울대학교 법전원 고학수 교수, 경북대 컴퓨터학부 김일곤 교수, 이지서티 이재훈 연구소장, 삼성서울병원 이병기 교수, 한국 CPO포럼 심상현 사무국장, 아주대학교 곽진 교수, 한라대학교 김순식 교수, 고려대학교 이인혜 연구원, 신시웨이 김광열 상무 등
- □ 서비스·데이터 분과 등에서 **제안된 시스템 기능** 및 구성도를 검토하고, 각 시스템별 보안요구사항 및 보안조치·대책을 규정
 - 기술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시스템 기능·구성은 대안을 제시하여 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
- □ 시민단체 간담회 등 의견수렴 시 정보보호 대책에 대해 중점 논의 추진

< 개인정보 유출 방지 >

□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통한 정보보호 강화

-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기관별 데이터 연계를 위한 **비식별 대상 개인건강정보 표준 마련**
- 보건의료 빅데이터 비식별 조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
- 각 공공기관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송부하거나, 최종 이용자 제공 시점에 **개인정보 비식별화 실시**
- **데이터 제공심의위원회**를 통해 **비식별화 평가 수준을 검토**하고 (k-익명성 등)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
- 데이터 제공 방법, 이용자 군, 법적근거 등에 따라 상이한 데이터 비식별화 기준 적용

□ 주민번호 일방 암호화(붙임 2 참고)를 통한 안전한 결합키 체제 활용

-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 주민번호의 일부 자리 및 기타 정보를 일방 암호화*함으로써, 두 개 이상의 원천기관의 자료 결합에 활용
 - 단순히 주민번호만을 암호화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, 무작위 숫자 (이하 암호키)와 함께 암호화*하는 방식을 채택
 - * 암호키를 이용하는 일방 암호화 방식. 美 연방정부 공무원 패스워드 저장 방식

□ 정보유출·재식별화 방지를 위한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

-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유도를 갖는 자료 활용 시 **클라우드 등 폐쇄적 환경을 활용**하여 데이터에 접근, 유출·재식별 등 방지
 - 조회 프로그램 작성 및 실행 기록, 결과 등을 중앙화 하여 관리 하는 등 자료 활용에 있어서 책임성을 강조하는 기술적 조치 이행
- 개인정보 열람, 조회기록 관제 시스템을 통해 특정인 정보 조회 등 확률 모델링 기반 위험 사례 자동탐지 기능 도입*
 - *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와 협조

□ 분양 데이터 유출경로 탐지를 위한 기술 도입

- 제공 데이터 중 일부에 대해 **미세한 무작위** 가감을 가하여, 전체적인 통계 영향은 없되, 제3자 제공 경로를 파악
 - * 예 : 키 180.3 → 180.2. 몸무게 75.2 →75.3

< 기술적 정보보안체계 구축 >

□ 공개키 기반 전송구간 암호화, 망분리 등 보안체계 완비

- 공개키 기반 전송구간 암호화(PKI*)를 통한 암호키, **데이터 전송 보호**
 - * Public Key Infrastructure : 데이터 전송 시 **별도 암호화 인증기관**을 활용, 가로채기 공격 등 각종 보안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암호화 방식. 행정망 내에서는 **행정안전부**에서 **암호화 인증기관 역할**을 수행(G-SSL)

- 발송기관(예: 건강보험공단), 수신기관(공유 플랫폼) 양자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PKI 구조를 활용하여 데이터 전송 암호화
- 행정망을 사용하여,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보안체계 완비
 - DDoS 등 외부자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, 망연계 서버를 통한 외부로부터의 접속은 별도의 보안조치를 통해 2중 관리

□ 보건의료 정보보호 기반기술 연구개발 추진

○ 블록체인, 정보보호 방법, 안전한 자료교류 등 향후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기반기술 개발 및 적용연구 추진

< 제도적 정보관리체계 강화 >

□ 오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

- 이용자에게 데이터 제공 시 정보제공 계약을 통해, 정보제공 시 가장 큰 위협인 제3자 유출, 재식별화 등을 금지
 - 당사자의 제3자 유출, 재식별화 시도 등을 금지하는 표준 정보 제공 계약서를 개발하고, 각 제공채널별로 적용
 - 사고 발생 시 원인 이용자 및 소속기관 이용제한 페널티 부여
- 데이터 분양 신청서 제출 시 기관 정보보호 인증 또는 데이터 관리체계 서술, 기관별 책임성 있는 사후관리체계 보완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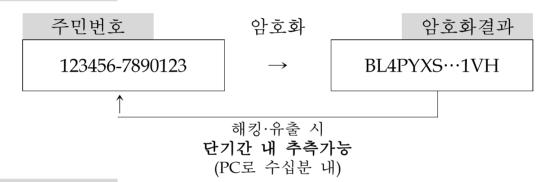
□ 보건의료 빅데이터시스템 정보보호 관리체계 연구

-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유·활용 기관을 위한 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마련
 - 보건의료정보 및 빅데이터 유통 환경에 적합한 **위험관리 모델** 개발
 - * 관련 국제표준(ISO 31000(위험관리), ISO 27005(정보보호 위험관리) 참조
-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을 위한 **클라우드 센터 보안적합성 검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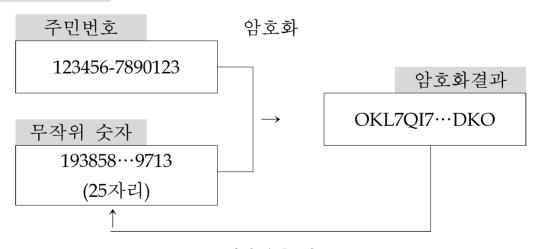
주민등록번호 일방 암호화 개념

- 주민번호만을 암호화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, **무작위 숫자와 함께 암호화*하는 방식**을 통해 해킹·유출 시에도 **주민번호 추측 불가능**
 - * Salt + Hash 방식, bcrypt, scrypt 등 활용
 - 기존 방식에 비해 추측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저히 길어져, 악호화된 주민번호가 유출되어도 사실상 해독이 불가능

기존방식



개편방식



해킹·유출 시 사실상 추측 불가능 (빠른 컴퓨터로도 오랜 기간 소요)

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공공적 활용 사례 [예시]

* 주요 분야별 대표적 1~2가지 유형 연구 소개

① 취약계층 건강권 관련 연구

- · 여성·장애인·아동·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 연구
 - 취약계층이 **많이 앓고 있는 질환을 데이터로부터 도출**하고, 환경 및 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대응책을 도출
 - 특히 빈도가 비 취약계층과 유사하더라도, 완치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그 비율 상 차이 등 데이터기반 건강격차 연구
- · 사회적 취약계층의 질병악화 경로 연구
 -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두드러지는 질병악화 양상 및 이유(적은 치료기회, 낮은 의료 접근성 등)를 분석,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
 - 질병악화에 따라 치료비용이 급증하는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출, 의료진·사회복지사 등으로 하여금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

② 사회적 건강위험 관련 연구

- · 지역별 건강 유해요인 도출
 - 환경, 교통, 주거, 산업, 식수관리 등 다양한 지역별 요인과 건강상태 간의 비교를 통해 지역별 건강 유해요인 도출
 - 특히 유해한 사례의 경우 행정조사 등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후보군을 도출, 전국단위 건강유해요소 스크리닝 연구
- · 직역별, 직장별 건강 유해요인 도출
 - 특정 직역 또는 사업소 등에서 특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 등을 연구하여 **산업안전 차원에서의 건강연구 수행**
 - 필요 시 시계열 연구를 통해 근로기간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직업재해 및 건강개선 등 추적조사 가능

③ 질환 양태 및 대책 관련 연구

- · 감염성 질환 확산경로 연구 / 확산 실시간 감지
 - 그간의 진료기록을 분석, 모든 감염성 질환의 확산경로·속도를 파악하고 확률모형化 하여 향후 감염확산에 대비
 - 약제 처방 기록(DUR) 등을 활용, 준 실시간 수준으로 감염성 질환 확산 모니터링 및 양상 예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
- · 질환별 다빈도 세부유형 및 악화경로 연구
 - 질환 악화 경로 분석을 통해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검진·진료 정책 개선
 - 대규모 연구를 통해 한국인 호발성 질환에 대해 그 **병리를** 구체화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방안을 연구

④ 보건의료 전달체계 관련 연구

- · 데이터기반 전달체계 유형별 문제분석 및 대책마련
 - 보건의료 전달체계 상 쏠림·비효율·중복투자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,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
 - 특히 상시적 보건의료 전달체계 모니터링 체계로서 **수가정책,**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 관찰 및 개선책 도출
- 현 전달체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새로운 건강문제 연구
 - 현재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**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** 건강 문제(예:만성질환의 과도한 급성기 외래진료 등) 대응책 마련
 - 지역별, 의료기관별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

⑤ 보건 · 복지 정책개선 관련 연구

- · 지역별 보건·복지 분야 시범사업의 건강결과 연구
 - 지역별 시범사업에 대해 미시행 지역과의 건강지표 비교를 통해 정책효과를 평가하고, 정책의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

- · 주요 취약계층별 보건·복지 정책 효과 모니터링
 - 취약계층 대상 보건·복지 정책 시행 전후, 수급률과의 비교 등을 통해 건강지표에의 영향을 분석, 개선방안 도출

⑥ 희귀·난치 질환 관련 연구

- · 희귀·난치 질환 임상양상 연구
 - 희귀·난치 질환 환자의 진료양상 등을 분석, 기존에 파악되지 않았던 약에 대한 반응 또는 임상양상을 연구
 - 자료 분석 과정에서 **희귀·난치 질환의 기전 이해** 및 **치료제** 개발의 실마리 발견 기대

⑦ 의약품 부작용 관련 연구

- 알려지지 않은 의약품 부작용 연구
 - 의약품 처방 자료와 진료결과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품목허가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부작용 발견 가능
 - 장기추적, 대규모 추적이 필요한 부작용, 특정 환자군에서만 발생하는 부작용 등의 발견에 유효할 것으로 기대

⑧ 의료기술 간 효과비교 연구

- · 치료법, 치료제, 의료기기 등 의료기술 간 효과비교 연구
 - 동일 질환에 대해 상이한 치료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, **효과** 측면에서의 상호 비교 연구 가능
- · 비용효과성 측정
 - **진료결과의 분석 평가**를 통해 특정 의료기술의 비용효과성을 분석, 보험급여 수가 결정 과정에서 활용
 - 특히 유사 효과 치료법 또는 유관 치료법과의 효과 비교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용효과성 산출 가능

주요 보건의료 빅데이터 데이터셋 사례 (예시)

* 향후 구체적인 범위는 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 추진

□ 병의원·약국 등 기관 데이터셋

- 요양기관 현황 상세내역 (심평원)
- 건강증진센터 이용현황,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현황 (건보공단)

□ 유전·신체계측 등 환자 데이터셋

- 국내 보유 생물테러가능 고위험병원체의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해독, 비교유전체 (질병관리본부)
- 시스템 생물학 기반 병원체 오믹스 표준 데이터 (질병관리본부)
- 유방암, 위암 환자군 유전정보 DB (질병관리본부)
- 장기요양DB 인정조사결과 DB (질병관리본부)

□ 질환·역학 등 질병 데이터셋

- 임신출산 여성, 장애인 등 취약계층, 경찰 등 특정 직업군과 같이 특정 대상자들로 구성된 목적용 DB (질병관리본부)
- 주요 질병 발생, 특정 질병 환자-대조군 등 특정 연구를 위한 목적용 DB (심평원, 질병관리본부)
- COPD 외 천식 등 관련 호흡기 질환 코호트 데이터 (심평원)
-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 현황(심평원) 및 시도별 신규 중증 암등록환자의 진료현황 데이터(암센터)

□ 의약품정보· 처방내역 등 의약품 데이터셋

- 원외처방 약제 통계자료/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 (심평원)
- 희귀난치성질환자 처방건수 및 약품비 정보 (심평원)
- 국가중점 의약품 처방(건보)

□ 급여·보험료 등 행정 데이터셋

- 보험급여 청구내역(심평원)
- 의료기관별 진료비 현황 정보(심평원), 건강보험가입정보(건보)

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예산 내역

□ 세부 예산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사업명	정부안	최종 심의액	비고
	플랫폼구축	7,731	4,601	31.30억 (40.4%) 감액
정보화	분석자료 공유네트워크	2,425	(좌동)	
사업	사업관리비	77	(좌동)	
	소계	10,233	7,103	31.30억 (30.58%) 감액
	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R&D	1,134	(좌동)	
D 0 D	보건의료 빅데이터 본R&D	1,900	(좌동)	
R&D	평가연구, 거버넌스지원	200	(좌동)	
	소계	3,234	(좌동)	
	합 계	13,467	10,337	31.30억 (23.2%) 감액

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경과

- □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실시 ('15~'16)
 - 기본계획 수립 연구('15.11), 정보화 전략계획(ISP) ('16.1)
- □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 구성 (*17.3월~)
 - (구성) 관계 부처, 공공기관, 기업·전문가 등 총 130여명으로 구성
 - * 학계·의료계·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, 정부부처 관계자, 공공기관(건강보험공단, 심사평가원, 질병관리본부, 국립암센터), 5개 분과위원회 130여명, 회의 총 40여회
 - (분과위원회) 추진단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*를 구성, 분야별 논의
 - * (5개 분과) ① 총괄 분과 ② 서비스 개발 분과 ③ 데이터 개방·연계 분과 ④ 정보보호·기술 분과 ⑤ 국민소통 분과
- □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심포지움 개최 (*17.6.12)
 -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수립 배경, 서비스 개발 경과, 시스템 구축계획 및 데이터셋, 정보보호전략·국민소통전략 개요 등 논의
- □ 시민사회단체 의견청취 ('17.8~, 진행 중)
 -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3회 개최 (12월 중 추가 개최 예정)

보건의료 빅데이터 해외사례

- ◇ 주요 선진국은 ①국가 전략 수립, ②전담 기관(플랫폼) 신설, ③서비스 · 데이 단 개발, ④제도 마련, ⑤R&D 지원의 사이클로 효율적인 활용 체계 구축
- □ (미국) 연방정부 중심의 전략·법제·표준·데이터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추진('04~)
 - * [전략] 의료정보기술추진계획('04), 빅데이터 추진계획('12), 정밀의료 추진계획('16) [법제] 건강정보기술법(HITECH Act, '09), 21세기 치유법('16) [표준] 보건부 산하 건강정보표준관리국(ONC) 설치('04), 표준화 활동 지속
 - 연방정부에서 보유한 Medicare·Medicaid 데이터를 연구자와 의료 기관에게 제공하고, 연구·본인열람·정책개선 등에 활용 중
- □ (일본) 첨단 의료 기술·서비스를 실현하고 의료·의약품·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제화, 데이터 정비, 활용 연구 추진
 - * [전략] 일본재흥전략('13). 건강·의료전략('13) [법제] 차세대의료기반법('17)
 - * 익명화 및 정보제공을 민간에까지 허용, 사후철회 제도 도입('17)
- □ (호주) 데이터 결합·제공 서비스('95~)의 활용 및 이를 기반으로 국가적 전략을 수립('13)하고, 연구개발·정책개선을 지원
 - 의료이용자료, 암등록자료, 인구동태자료, 출생·사망, 부모정보 등 **개인 단위 자료를 결합** 후 **비식별화**하여 연구자에게 제공
- □ (英 잉글랜드)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사업*을 추진 중이었으나, 개인 정보처리동의 미흡, 본인통지 누락 등을 이유로 폐지('16.7)
 - * NHS Digital의 care.data 프로그램
- □ (英 스코틀랜드) 제3자 신뢰방식(TTPI)이라는 방법을 활용, 연구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결합·제공하는 프로그램(SILC) 운영('14~)
 - * (제3자 신뢰방식) 공급기관·연계기관 외 독립적인 제3자를 둠으로써, 데이터 원천기관·결합기관 모두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료결합을 할 수 있는 기술

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주요 기능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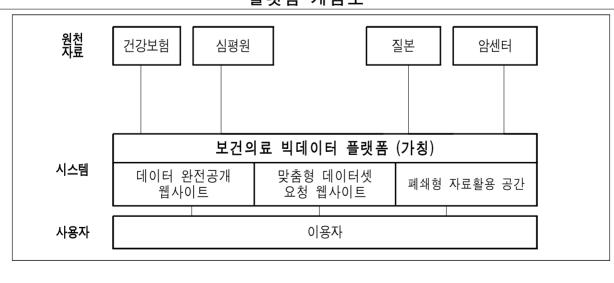
○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

이용자	정책입안자·연구자, 의학연구자, 일반국민 등
\ \ \ \	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결합, 처리 등을 거쳐 이용자에게 제공
개요	주요 공공기관과의 온라인 연계를 통해 기관보유 빅데이터를

핵심기능

- (자료연계) 기관별 데이터공개 로드맵에 기반하여 공개용 데이터마트 구축 하고, 플랫폼 수준에서의 협약을 통한 연계체계 구축
 - 플랫폼에서 연계요청시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가 동작하고, 추출된 데 이터는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연계 데이터 셋을 신속하게 생성
 - 비식별화 및 암호화된 데이터를 기관으로부터 전송받아 수집하고 연계 하고, 연계에 사용된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후 단순 일련번호로 대체
- (정보보호)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기본적으로 기관별 비식별화-플랫폼 비식별화의 이중 비식별화를 거쳐 이용자에게 제공함
 - 비식별화는 자동전략수립→비식별화→평가(보고서 생성) 절차로 구성
 - 주민번호는 플랫폼과 별도로 존재하는 암호화 키 발급시스템에서 주민 번호 암호화 방식을 요청시마다 기관으로 재송부하여 암호화함
- (이용자제공) 각 기관으로부터 수합하여 처리한 자료는 활용 플랫폼으로 전송. 방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함

플랫폼 개념도



○ 데이터 완전공개 웹사이트

개요	①미리 잘 정리된 파일 형태의 공개 데이터 다운로드기능 제공		
/	②OpenAPI 방식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자료를 제공		
이용자	정책입안자, 연구자		
취 시그나			

핵심기능

- (수집) 수요조사, 기 제공된 데이터 등을 통해 제공 데이터셋 개발
- (정보보호) 공공영역으로 제한 없이 제공됨에 따라 강력한 비식별화 및 비식별화 검증
- (제공) 웹사이트를 통한 제공 또는 API를 통한 외부 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



○ 맞춤형 데이터셋 요청 웹사이트

711.0	가상 환경에 설치된 통계·시각화 패키지(R, 태블로 등) 및 데이터				
개요	공유 플랫폼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, 통계처리 등 가공				
이용자	정책입안자, 연구자				
	핵심기능				
○ (신청) 연	구목적, 필요 데이터 등을 기재 후 신청				
○ (심의) 시	회편익,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				
○ (제공) 비	식별화한 데이터 제공				
○ (관리) 더	이터 사용 후 폐기 또는 지속 사용 시 폐기 여부 및 보안체계				
Si Si	우지 등 사후 관리 실시				
	플랫폼 개념도				
	_ 신청 심의 제공 관리				
연구자	→ 제공기관 → 심의기구 → 연구자 → 활용				

○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웹사이트

개요	정부가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세부 메타데이터를 검색할		
기표	수 있도록 제공(통상 "완전공개 웹사이트" 와 통합운영 추세)		
이용자	정책입안자, 연구자		
해시기느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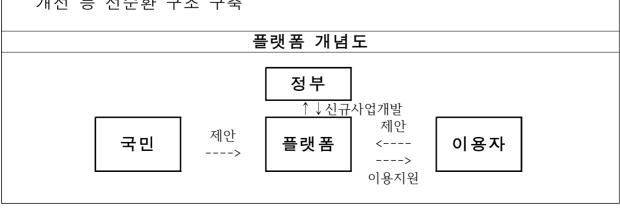
- (카탈로그) 미국. 영국. 호주 등의 정보공개포탈에서 사용되는 CKAN을 적용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카탈로그 제공
- * Comprehensive Knowledge Archive Network, 세계최대 오픈소스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
- (정보제공) 포탈을 통한 정보 제공 및 REST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API 정보 제공 병행



○ 빅데이터 활용 선진사례 웹사이트

	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술 및 시장 대응하기 위			
개요	하여 새로운 정부 서비스 제안 및 정부 서비스를 활용한 좋은			
	사업례 등 등록			
이용자	일반국민, 플랫폼 이용자			
핵심기능				

- (서비스제안)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/제공 신청 창구를 일원화 하여 기관별 중복 사업 방지 및 효율적인 신규 사업 개발
 - * 신규 서비스, API 개발, 제공 통계 등에 활용
- (사업현황) 정부 제공 서비스 활용 사례 공유를 통해 피드백을 통한 사업 개선 등 선순환 구조 구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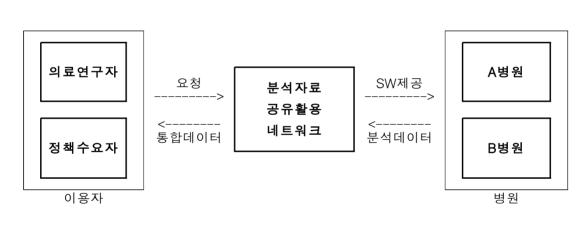
○ 분석자료 공유·활용 네트워크

개요	민간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 내 보건의료 데이터 간 "분석자료			
/η Δ	공유·활용 네트워크"구축			
이용자	정책입안자, 연구자			
된 시 기 느				

핵심기능

- (개요) 연구자가 분석을 의뢰하면, 각 병원이 보유한 의료기록(EMR) 데 이터에서 개인정보 이동 없이, 통계처리·분석한 결과만을 취합하여 제공
 - * 병원에서 의료기록이 반출되지 않음
 - 현재 각 병원에 분석을 의뢰하면 개별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자료이나, 모든 병원에 제각각 요청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음
- (연구지원)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공 및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빅데이터 연구 지원
- (분석제공) 수요기업의 요청에 따른 각 기관의 분석 결과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효율적인 연구 데이터 제공

플랫폼 개념도



< 플랫폼 활용 예시 >

